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홍남기 (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서민·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4. 11. ~ 2022. 4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“423원으로 한다”를 “423원으로,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70원으로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“300원으로 한다”를 “300원으로,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으로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) 2021년 11월 12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2(탄력세율)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: 리터당 529원. 다만,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<u>423원으로 한다.</u></p> <p>2.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: 리터당 375원. 다만,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<u>300원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의2(탄력세율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423원으로,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70원으로 한다.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0원으로,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으로 한다.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1